경기도교육청 소속 기간제교원 정근수당 지급 방식 변경 안내

경기도교육청

□ 근거

○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(정근수당) 준용

□ 목적

○ 기간제교원의 보수(정근수당)에 대한 처우 개선

□ 지급 방식

○ 경기도교육청 내 학교 등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실적을 모두 인정하여 정근수당 지급

- 경기도 내 학교 등에서, 1~2월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3월 이후 동일학교 및 타학교 등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사는, 1~2월 근무실적을 인정하여 정근수당 지급

※ 경기도 내 학교 등에서 1~2월 근무하고, 3월 이후 경기도 내 학교 등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원 : 1~2월 근무 실적을 인정하여 정근수당에 포함

※ 타시도 학교 등에서 1~2월 근무하고, 3월 이후 경기도 내 학교 등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원 : 1~2월 근무 실적을 정근수당에 포함하지 않음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1	경기도 내 학교 등에서 1~2월 근무하고, 3월 이후 동일학교 등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원 ▶ 1~2월 근무실적을 정근수당에 포함	동일
2	경기도 내 학교 등에서 1~2월 근무하고, 3월 이후 타학교 등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원 ▸ 1~2월 근무실적을 정근수당에 포함하지 않음	경기도 내 학교 등에서 1~2월 근무하고, 3월 이후 타학교 등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원 ▸ 1~2월 근무실적을 정근수당에 포함
3	타시도 학교 등에서 1~2월 근무하고, 3월 이후 경기도 내 학교 등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원 ▸ 1~2월 근무실적을 정근수당에 포함하지 않음	동일

□ 적용 시기

○ 적용 시기: 2023. 1. 1.자부터

□ 행정 사항

○ 2023.1.1.부터 기간제교원 정근수당 지급 업무에 반영하여 운영

※ 2022.12.31. 이전 기간제교원 정근수당 지급분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음

○ ‘공립 초·중등학교 계약제교원운영지침’에 추후 반영 예정

○ 1~2월 경기도교육청 내 학교 등에 근무한 실적은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 (기간제교원 경력증명서 등)

2023학년도 계약제교원 관련 질의 및 답변

경기도교육청 교원인사과

<table>
<tr><th>순</th><th>질의</th><th>답변</th><th>비고</th></tr>
<tr>
<td>7</td>
<td>기간제교원 정근수당 지급 방법은?
(교원인사과-15084(2023.6.21.))

(* 1,2월 정규교원, 3~6월 기간제교원일 경우 정근수당 지급 방법)</td>
<td>- 공문내용

□ 지급 방식
○ <u>경기도교육청 내 학교 등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실적을 모두 인정하여 정근수당 지급</u>
- 경기도 내 학교 등에서, 1~2월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3월 이후 동일학교 및 타학교 등으로 채용된 기간제교사는, <u>1~2월 근무실적을 인정하여 정근수당 지급</u>

· 지급방식 변경 공문내용은 '<u>기간제교사로 근무한 실적</u>'을 인정하는 것임
- 사례(해석)
<table>
<tr><th>1,2월</th><th>3~6월</th><th>지급방법</th></tr>
<tr><td>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등 기간제교원으로 근무</td><td>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등 기간제교원으로 근무</td><td>6개월(1~6월)정근수당 지급</td></tr>
<tr><td>경기도교육청소속 학교 등 정규교원으로 근무</td><td>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등 기간제교원으로 근무</td><td>4개월(3~6월)정근수당 지급</td></tr>
</table>
※ 단, 1~6월 실제근무기간만 인정함</td>
<td></td>
</tr>
</table>